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10209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백태균, 심승미, 심유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달웅, 권유진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37,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6.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기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해온 사람으로

1999년부터 D과 함께 중국산 알에스(RS) 체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해왔다.

나. 피고와 D은 2000. 1. 25.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동업약정에 따른 신설법인으로 E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동업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D은 2000. 12. 10. 동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를

경영하였다.

다. D은 2004. 4. 12. 단독으로 투자하여 주식회사 G(이하 ‘신설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스프라켓

등의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라. 피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1630호로 ‘2009. 9.경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대신 피고의 지분을 D에게 넘기고, D이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부산고등법원 2018나50805호, 대법원 2018다268958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D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097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피고가 D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45,825,904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제1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동업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합100103호로 D이 동업 회사와

신설 회사 모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동업 회사에 대해 횡령, 배임 행위를 저지른 의심이 들어 주주로서 동업 회사의 회계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재무 및 영업 상황을 확인하며 경영부실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힌 뒤 D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등 법률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회계 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21.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이

부산고등법원 2019라5111호, 대법원 2020마5045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동업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합100161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피고가 동업 회사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11,111,16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제2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동업 회사의 이사인 D, H(D의 처), 원고(D의 사위)(이하 위 3인을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100948호(2020머106509)로 동업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상법상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동업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신설 회사에는 이익이 되게 하였으므로 동업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2021. 3. 31.까지,

가.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1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동업 회사 주식(액면가 5,000원) 피고 명의 보유분 18,000주, I 명의 보유분 32,000주, J 명의 보유분 20,000주, K 명의 보유분 20,000주를 양도하고 동업 회사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동업 회사 주식을 양도받고 위 주식 양도통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피고에게 11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즉시 D에 대한 이 법원 2019카단100030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3. 피고와 원고 등은 피고의 기존 회사, 동업 회사, 신설 회사 관련 운영과 수익, 동업관계 등에 관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회사들 운영과 수익, 동업관계 등에 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문제제기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사. 원고 등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11억 원에서 제1, 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상환액 합계 56,937,064원을 공제한 금원만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상환액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상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조정금 지급의 일부 이행에 불과하다는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원고

등으로부터 1,043,062,936원(1,100,000,000원 - 56,937,064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채1017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 등이 위와 같이 공제한 제1, 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상환액 합계 56,937,064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반면 원고측의 D와 동업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제1, 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상환액 합계 56,937,06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1억 원에서 56,937,064원을 공제한 1,043,062,936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56,937,064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갑 제6,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또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동업 회사, 신설 회사의 운영, 수익, 동업 관계 등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민사 소송이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수 회에 걸쳐 동일한 사유로 배임, 횡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② 이에 피고와 원고 등은 위와 같은 오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고 그 방법은 동업 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진행한 동업관계 해소와 이에 따른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임에 동의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③ 그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정결정이 성립되었고, 오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이루는 의미에서 구체적 채권, 채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원고 등은 피고의 기존 회사, 동업 회사, 신설 회사 관련 운영과 수익, 동업관계 등에 관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회사들 운영과 수익, 동업관계 등에 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문제제기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기존 회사, 동업 회사, 신설 회사 관련 운영과 수익, 동업관계 등과 관련한 개별 채권, 채무를 이 사건 조정결정 내용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하여 오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조정 당시 쌍방의 의사, 상호간에 협의와 양보를 통하여 이루어진 조정안의 의미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정결정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제1, 2 소송비용확정결정의 대상 사건들 또한 동업 회사, 신설 회사 관련 운영과 수익, 동업관계 등과 관련한 소송임이 명백하고, 원고 스스로도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채무에서 원고 등이 아닌 동업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제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상환액 또한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위에서 본 개별 사건들의 분쟁을 동업 회사, 신설 회사 관련 운영과 수익, 동업관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섭